

의안 번호	18-79
----------	-------

제출년월일 : 2018. 10. .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홀로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미혼모가 출산초기 위기 상황을 극복하여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등(안 제4조~제6조)
- 라. 지원중지, 환수조치(안 제7조~제8조)
- 마. 비밀유지(안 제9조)
- 바. 시행규칙(안 제10조)
- 사. 부 칙

3. 참고사항

- 가. 추진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 나. 협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 다. 규제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6. 9. 13. ~ 10. 4.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 권고사항 없음
- 3)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 평가 : 권고사항 반영
-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18.10.11.)
-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6) 비용추계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미혼부”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출생한 본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을 말한다.
3. “미혼모·부 자녀”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아동으로서 미혼모·부의 자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혼모(미혼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자녀(이하 “미혼모 가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 가족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 및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마포구 미혼모 가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및 지원방법, 관련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혼모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미혼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포구 내 미혼모 가족 실태조사
2.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미혼모의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
4. 미혼모 자녀 양육비 및 자립지원
5. 미혼모가족복지시설과 업무협력 및 지원
6. 그 밖에 미혼모 가족의 생활안정, 고용촉진, 자립 등 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마포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비밀유지) 미혼모 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 기관 등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미혼모 지원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제6조 (지원사업)

2. 비용추계의 전제

- ① 지원금액 : 만 5세이하 자녀 1인당 100,000원
- ② 지원대상 : 마포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1)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지원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2) 미혼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자

■ 대상 미혼모가족 현황 (2018.7.31 기준 / 단위 : 명)

대상	합계		법정 미혼모		비법정 시설입소자	
	세대	대상아동	세대	대상아동	세대	대상아동
만5세이하 (2012. 1. 1. 이후 출생)	42	42	27	27	15	15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2019	2020						
세출	미혼모 아동양육비	50,400	50,400	50,400	50,400	50,400	50,400	50,400	252,000
	교육 및 홍보비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7,500
□ 총 비용(a-b)		51,900	51,900	51,900	51,900	51,900	51,900	51,900	259,5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2019	2020						
자체 수입	지방세수입등	51,900	51,900	51,900	51,900	51,900	51,900	51,900	259,500
	합계	51,900	51,900	51,900	51,900	51,900	51,900	51,900	259,500

5. 덧붙이는 의견 : 구체적인 재원 및 세출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김고명
연락처	02-3153-8936